

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제5.1조 목적

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
- 나.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
- 다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, 그리고
- 라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

제5.2조 적용범위와 정의

- 1.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- 2. 이 장의 목적상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.

제5.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재확인

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양 당사국 간에 적용하고,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제5.4조 기술협력

- 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,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하

기로 합의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한다. 그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
- 나.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, 질병/병해충 관리 방법, 실험실 시험 기술 그리고 국내 규정 에 관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협력 강화
- 다. 양 당사국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
- 라.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양 당사국의 역량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,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 교환 프로그램 개발, 그리고
- 마.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
 - 1) 동물 및 식물 질병/병해충 조사
 - 2) 동물 및 식물 질병/병해충 예방 및 관리
 - 3)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검출 방법, 그리고
 - 4) 유해 물질과 농화학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의 조사 및 관리와 그 밖의 식품 안전 문제

제5.5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.

2.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,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,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, 그리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, 양자 간의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,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이러한 목적으로, 위원회는

- 가.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.
 - 나.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.
 - 다.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.
 - 라.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되는 비준수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소통한다.
 - 마.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할 때, 필요한 경우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,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, 적절하다면, 다룰 목적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기술 협의회 설치를 고려한다. 기술 협의회는 요청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최된다.
 - 바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,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세계동물보건기구,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 체제 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,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사안,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조율한다.
 - 사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, 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의 조정을 증진한다. 그리고
 - 아.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사안에 관련된 양자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.
4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5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. 회의 장소 또한 상호 합의되며, 의장은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.
6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,

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.

7. 특히 위원회 회의 등 이 장의 이행을 조율하고,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.

가. 중국의 경우,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한국의 경우,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

제5.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